

「한국은행 제주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」 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«별지 서식»의 한국은행 제주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배정 관련 심사표</p> <p>2. 대출금원장(사본)</p> <p>3. 사업자등록증(명)(사본)</p> <p>4. 금리산출표(사본)</p> <p>5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</p> <p>6. 그 밖에 지원대상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</p>	<p>제3조(사후심사 자료제출)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 <p>1. 대출금원장(사본)</p> <p>2. 사업자등록증(명)(사본)</p> <p>3. 금리산출표(사본)</p> <p>4.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(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)</p> <p>5. 그 밖에 지원대상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별도로 요청하는 자료</p>	<p>- 사후심사 관련 제출자료 목록 정비(한도배정 관련 심사표 삭제)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u><신 설></u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 <2025. 6. 20.></u></p> <p><u>이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 명시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¹⁾²⁾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fe2f3;">지원대상 코드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fe2f3;">지원대상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fe2f3;">지원부문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fe2f3;">선 정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녹색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 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 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 -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(KSIC 28114, 28202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1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 ① 업종기준 ○ 숙박 및 음식점업(KSIC 55~56) ○ 도매 및 소매업(KSIC 45~47) (단, 대형종합소매업(4711), 담배소매업(47222), 연료소매업(477), 약국(47811) 제외) ○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(KSIC 752) ○ 운수 및 창고업(KSIC 49~52) (이하 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2)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(이하 생략)</p>	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A4	녹색기업	전략	(중략) 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 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 -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(KSIC 28114, 28202)	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(중략) ① 업종기준 ○ 숙박 및 음식점업(KSIC 55~56) ○ 도매 및 소매업(KSIC 45~47) (단, 대형종합소매업(4711), 담배소매업(47222) , 연료소매업(477), 약국(47811) 제외) ○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(KSIC 752) ○ 운수 및 창고업(KSIC 49~52) (이하 생략)	<p><별표1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¹⁾²⁾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fe2f3;">지원대상 코드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fe2f3;">지원대상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fe2f3;">지원부문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cfe2f3;">선 정 기 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4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녹색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략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 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 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 - 에너지저장장치 및 이차전지 제조업체(KSIC 28113, 28202, 28209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16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략) ① 업종기준 ○ 숙박 및 음식점업(KSIC 55~56) ○ 도매 및 소매업(KSIC 45~47) (단, 대형종합소매업(4711), 담배소매업(47232), 연료소매업(477), 약국(47811) 제외) ○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(KSIC 752) ○ 운수 및 창고업(KSIC 49~52) (이하 생략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된 업종의 기준은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2)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(이하 생략)</p>	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A4	녹색기업	전략	(중략) 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 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 - 에너지저장장치 및 이차전지 제조업체(KSIC 28113, 28202, 28209)	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(중략) ① 업종기준 ○ 숙박 및 음식점업(KSIC 55~56) ○ 도매 및 소매업(KSIC 45~47) (단, 대형종합소매업(4711), 담배소매업(47232) , 연료소매업(477), 약국(47811) 제외) ○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(KSIC 752) ○ 운수 및 창고업(KSIC 49~52) (이하 생략)	<p>-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제 11차 개정내용 반영</p> <p>-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 절차」 개정 내용 반영</p>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
A4	녹색기업	전략	(중략) 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 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 - 에너지저장장치 및 축전지 제조업체(KSIC 28114, 28202)																							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(중략) ① 업종기준 ○ 숙박 및 음식점업(KSIC 55~56) ○ 도매 및 소매업(KSIC 45~47) (단, 대형종합소매업(4711), 담배소매업(47222) , 연료소매업(477), 약국(47811) 제외) ○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(KSIC 752) ○ 운수 및 창고업(KSIC 49~52) (이하 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대상 코드	지원대상	지원부문	선 정 기 준																							
A4	녹색기업	전략	(중략) ②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10호 의한 '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업' 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5호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단, 태양력발전업체(KSIC 35114)는 제외) - 하수,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의 업체(KSIC 37~39) - 에너지저장장치 및 이차전지 제조업체(KSIC 28113, 28202, 28209)																							
A16	경기부진·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	특별	(중략) ① 업종기준 ○ 숙박 및 음식점업(KSIC 55~56) ○ 도매 및 소매업(KSIC 45~47) (단, 대형종합소매업(4711), 담배소매업(47232) , 연료소매업(477), 약국(47811) 제외) ○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(KSIC 752) ○ 운수 및 창고업(KSIC 49~52) (이하 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

<별표1-1>

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해당 업종

산 업	KSIC 코드 (제10차)	업 종
청정 바이오	10501	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
	10613	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
	10619	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
	10620	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
	10711	떡류 제조업
	10712	빵류 제조업
	10713	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
	10730	면류,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
	10741	식초,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
	10742	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
	10749	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
	10751	도시락류 제조업
	10759	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
	10792	차류 가공업
	10794	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
	10796	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
	10797	건강 기능식품 제조업
10799	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	
	21102	생물학적 제제 제조업
그린에너지 솔루션	35119	기타 발전업

<별표1-1>

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 해당 업종

산 업	KSIC 코드 (제11차)	업 종	
청정 바이오	10421	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	
	10513	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	
	10519	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	
	10520	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	
	10601	떡류 제조업	
	10602	빵류 제조업	
	10603	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	
	10820	면류,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	
	10831	식초,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	
	10832	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	
	10839	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	
	10701	도시락류 제조업	
	10709	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	
	10892	차류 가공업	
	10894	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	
	10896	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	
	10897	건강 기능식품 제조업	
	10899	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	
		21100	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
		21301	체외 진단 시약 제조업
그린에너지 솔루션	35115	풍력 발전업	
	35119	기타 발전업	

-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제11차 개정 내용 반영 (코드 변경 및 세분화)

<별표2>
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⁾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금융 및 보험업	65 <u>보험 및 연금업</u>

주: 1)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

<별표2>

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¹⁾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1차)
금융 및 보험업	65 <u>보험업</u>
행정업	846 <u>사회보장보험업 및 연금업</u>

주: 1)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, 주된 업종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름

- 한국표준산업분류(KSIC) 제 11차 개정내용 반영

- 「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」 개정내용 반영